E

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

정보통신망

우)360-568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55-7 /전화 /043)220-5536 /팩스 /전송 220-5574 단지조성과장 강태형 기획팀장 유현종 /담당자 유현종

문서번호 단지58350--287

시행일자 2002.05.15 (영구)

공개여부 공개

수신 (주) 아 토 문상영 귀하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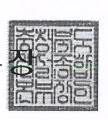
선			지		
람			시		
접	일자 시간		결		
수	번호		재		
처리과			공		
담당자			람		
심사자			싣	사일	

제목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변경 입주계약서 송부

- 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
- 2.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내 연관생산용지 17-3, 17-4블럭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코자 붙임과 같이 입주계약서를 송 부하오니 계약내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첨부된 입주계 약서 2부중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법인인감으로 날인(각장마다 간인)하여 우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붙 임: 입주계약서 2부. 끝.

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



「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」입주계약서

甲: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 송 영



乙 : 업체명 : (주) 아 토

소재지 :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17-3, 17-4블럭

대표자 : 문 상 영

「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」입주 계약서

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"甲", 공단 내 입주기업체 대표자를 "乙"이라 칭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입주계약 내용)

- ① 업체명:(주)아토
- ② 대표자: 문상 영
- ③ 소 재 지 :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17-3, 17-4블럭
- ④ 업 종:산업용가스 제조업 (한국표준산업분류 24121)

A Jam | Dital

ILITIOIT!

- ⑤ 주생산품 : 고순도가스
- ⑥ 부지면적 : 20,837.5m²
- ① 건축면적 : 5,700㎡(제조시설 3,000. 기타부대시설 2,700)
- ⑧ 위 치 :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17-3, 17-4 블럭
- 제2조(토지의 분양계약 및 이용) ① "乙"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② "乙"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대지는 지정된 용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.
- 제3조(변경계약) "乙"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"甲"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(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)
 - ② 업종 또는 사업 내용
 - ③ 부지면적(규칙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)
 - ④ 건축면적(규칙 제35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)
- 제4조(신고사항) "乙"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때에는 "甲"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산업용지의 환수) "甲"은 "乙"이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

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.

- 제6조(입주계약 해지 등) "甲"은 "乙"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"乙"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 - ②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 - ③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,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.
 -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
 - ⑤ 법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
- 제7조(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 처분) "乙"이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.
- 제8조(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) "乙"은 "甲"의 산업단지 방재계획에 의한 풍수해 등 재해예방 및 복구, 위험시설의 안전관리, 공해방지 및 산업단지의 방호에 필요한 지시와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보고) "乙"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① 공장, 기타 시설의 착공 및 준공
 - ② 입주 및 가동, 휴업, 폐업
 - ③ 생산, 수출업 및 고용에 관한 사항
 - ④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관리사항

제10조(해석) 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"甲""乙"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

하였을 경우에는 "甲"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1조(기타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에 따르며,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발생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甲""乙" 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02. 5.



甲: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(인)



乙 : 업체명 : (주) 아 토

소재지 :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17-3, 17-4블럭

대표자 : 문 상 영 (인)